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가단52388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윤예림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162,801원 및 그 중 6,817,675원에 대하여 2022. 7. 29.부터 2022. 8. 18.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2. 1.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2. 1. 25. 접수 제201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강건우

별지